

개인정보 침해사고 나면

정보처리자가 ‘잘못 없음’ 입증해야

개인정보보호법 9월30일 시행...사업자 의무 강화



장주봉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업자에 대하여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적용범위 논란 여전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통신망법 및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던 호텔, 항공사, 학원 등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상품판매나 서비스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에,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또 직원의 개인정보, 인터넷 관련 서비스와 별개로 수집한 각종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될 경우에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 **홈피 운영 호텔, 항공사, 학원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여부 논란** ”

관련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67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이 준용되

고객관계 전제

기존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거래관계(고객관계)를 전제로 해당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용정보법 역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그 고객(잠재적인 고객 포함)을 대상으로 신용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개인정보보호법은 그와 같은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라는 개념만을 이용하여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에 서비스 제공 관계 또는 거래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은 거래관계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에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와 기타 사업자가 보유·이용하고 있는 기타 개인정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주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대체로 소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고, 무엇보다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수집·이용 동의받아야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받

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 추후에 개인정보 이용범위 변경되면 정보주체로부터 추가로 동의받아야 ”

이용·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추후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이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할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동의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수집하여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관리적 보호조치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보호조치를 적절히 취했는지 여부는 향후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보호조치를 빠짐

없이 취하여야 한다.

유출 내역·대책 통지해야

그 외에도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위탁과 관련된 사실의 공개 또는 통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위와 같은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

보주체들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내역과 피해방지 대책 등을 통지하여 정보주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된 동의서를 징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수립하여 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위탁함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T]